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2다295513 판결 [손해배상(기)]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건	2022다295513 손해배상(기)
원고,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김성호, 김영민, 김창권, 안상현, 조건주, 이민걸, 이수열, 이인복, 조희환, 유승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고영한, 권오준, 김현경, 박재필, 이동훈, 정동민, 곽희재, 김재형
피고,피상고인	1. B 합자회사 2. C 합자회사 3. D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다래, 김대희, 김수형, 송지연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현 담당변호사 김선우, 박희우, 이현철, 정한진, 허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10. 6. 선고 2020나2025145 판결
판결선고	2025. 6.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중대한 부정적 영향’ 해당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판시 제1, 2사정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조 제14항 본문, 제10조 제1항 제7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MAE(Material Adverse Effect, 중대한 부정적 영향) 해제 조항’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분할대상사업 등의 사업, 자산, 부채, 재무상태 또는 경영실적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또는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사건, 사유 또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중대한 부정적 영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기업가치 감소분 산정방법 등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판시 제1, 2사정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개별적으로 또는 다른 부정적 사건, 사유 또는 사정과 종합하여 분할대상사업의 가치를 최종매매대금의 10% 이상 감소시키는, 또는 그와 같이 감소시킬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사정’으로서 이 사건 MAE 해제조항에서 정한 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업가치 감소분의 산정방법, 비교의 기준시점, 처분문서와 법률행위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이유모순, 변론주의 위반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중대한 부정적 영향’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제1조 제14항 단서에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현존하는 사건, 사유 또는 사정으로서,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원고가 구두로 답변한 내용 및 원고가 외부에 공개한 자료 등을 통하여 알고 있었던 것’을 이 사건 MAE 해제 조항에서 정한 해제사유의 예외로 규정하였는데, 판시 제1, 2사정은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피고들의 2018. 7. 17. 자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중대한 부정적 영향’의 예외사유, 해제사유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경필(재판장) 이흥구(주심) 오석준 이숙연